

서울특별시의회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의안 번호	관련 1380
----------	------------

제안년월일 : 2023년 12월 21일

제안자 : 운영위원장

1. 수정이유

- 서울특별시 행정구역 체계를 반영하여 청구인명부를 구분하여 제출토록 하고, 일부 경미한 오기 등을 수정하여 법령체계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2. 수정의 주요내용

- 서울특별시 행정구역 체계를 반영하고 그 밖의 일부 오류 사항을 수정함(안 제7조제2항)
- 법령체계성을 확보하기 위해 일부 사항을 수정함(안 제12조제4호)

3. 참고사항

- 관계법령 :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
- 예산조치 : 비용추계 비대상
- 기타사항 : 수정안조문대비표 참조.

서울특별시의회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서울특별시의회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 제7조제2항 중 “청부인명부” 를 “청구인명부” 로, “읍·면·동” 을 “자치구 동” 으로 한다.

안 제12조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제2조제1항에 따른 교육·홍보·지원 등 사무

수정안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수 정 안
<p>제2조(주민조례청구권의 보장) ① 서울특별시의 회(이하 “의회“라 한다)는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 른 청구권자(이하 “청 구권자“라 한다)가 조 례를 제정하거나 개정 또는 폐지할 것을 청구 (이하 “주민조례청구 “라 한다)할 수 있도록 주민조례청구 절차에 대한 홍보·교육 및 주 민청구조례안의 작성에 대한 자문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p> <p>② (생 략)</p>	<p>제2조(주민조례청구권의 보장 등) ① 서울특별 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는 「주민조례발 안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에 따른 청구권자(이하 “청구권자“라 한다)가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 정 또는 폐지할 것을 청구(이하 “주민조례청 구“라 한다)할 수 있도 록 주민조례청구의 요 건, 참여·서명방법 및 절차 등에 대한 홍보· 교육과 주민청구조례안 의 작성에 대한 자문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 야 한다.</p> <p>② (현행과 같음)</p>	<p>제2조(주민조례청구권의 보장 등) ① (개정안과 같음)</p> <p>② (현행과 같음)</p>
<p>제4조(조례의 제정·개정·폐지 청구서 등)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조 례의 제정·개정·폐지 청구서(이하 “청구서“라 한다)와 대표자 증</p>	<p>제4조(조례의 제정·개정·폐지 청구서 등) ① - ----- ----- ----- 한다)-----</p>	<p>제4조(조례의 제정·개정·폐지 청구서 등) ① (개정안과 같음)</p>

현행	개정안	수정안
<p>명서의 발급신청서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p> <p><신설></p> <p><신설></p> <p>제5조(대표자증명서 발급 등) ① 법 제6조제2항에 따라 서울특별시의</p>	<p>----- -----.</p> <p>② 대표자가 복수인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공동대표자용 서식을 제출하여야 한다. 대표자 전원의 동의로 주민조례청구에 필요한 통지를 받을 3인 이내의 대표자(이하 “선정대표자”라 한다)를 지정할 수 있으며, 서울특별시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선정대표자에 대한 통지로 전체 대표자에 대한 통지를 갈음할 수 있다.</p> <p>③ 대표자가 제2항 후단에 따른 선정대표자를 지정하지 않는 경우 의장은 선정대표자의 지정을 요청할 수 있다.</p> <p>제5조(대표자증명서 발급 등) ① ----- ----- 의장-----</p>	<p>② (개정안과 같음)</p> <p>③ (개정안과 같음)</p> <p>제5조(대표자증명서 발급 등) ① (개정안과 같음)</p>

현행	개정안	수정안
<p><u>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발급하는 청구인의 대표자 증명서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u></p> <p>② 의장이 법 제6조제2항에 따라 <u>대표자 증명서</u> 발급 사실을 공표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p> <p>1. ~ 4. (생략)</p> <p><u><신설></u></p> <p>제6조(서명요청권의 위임 신고서 등) 법 제7조제</p>	<p>-----</p> <p>-----</p> <p>- <u>대표자증명서는 별지 제3호서식</u>-----.</p> <p>② -----</p> <p>----- <u>대표자증명서</u> -----</p> <p>-----</p> <p>-----</p> <p>-----.</p> <p>1. ~ 4. (현행과 같음)</p> <p>③ <u>대표자는 법 제12조 및 이 조제 제11조의2에 따른 주민조례청구의 수리·각하 결정전까지 의장에게 서면으로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주민조례청구의 철회를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대표자가 복수인 경우에는 제4조제2항의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공동대표자용 서식을 제출하여야 한다.</u></p> <p>제6조(서명요청권의 위임 신고서 등) -----</p>	<p>② (개정안과 같음)</p> <p>1. ~ 4. (개정안과 같음)</p> <p>③ (개정안과 같음)</p> <p>제6조(서명요청권의 위임 신고서 등) (개정안과</p>

현행	개정안	수정안
<p>2항에 따른 대표자의 서명요청권 위임신고서는 <u>별지 제3호서식</u>에 따르고, 서명요청권 위임신고증은 <u>별지 제4호서식</u>에 따른다.</p>	<p>----- ----- <u>별지 제5호서식</u>----- ----- ---- <u>별지 제6호서식</u>----- -----.</p>	<p>같음)</p>
<p>제7조(청구인명부) 법 제9조에 따른 청구인명부는 <u>별지 제5호서식</u>에 따른다.</p>	<p>제7조(청구인명부) ① -- ----- - <u>별지 제7호서식</u>----- -----.</p>	<p>제7조(청구인명부) ① (개정안과 같음)</p>
<p><신 설></p>	<p>② <u>대표자는 청부인명부를 읍·면·동 별로 구분하여 권별로 묶고 각 권에 별지 제7호서식의 표지를 부착하여 제출하여야 한다.</u></p>	<p>② ----- 청구인명부를 자치구 동 ----- ----- ----- -----.</p>
<p>제10조(이의신청) ① 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청구인명부의 서명에 이의를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u>별지 제6호서식</u>의 이의신청서를 의장에게 제출해야 한다.</p>	<p>제10조(이의신청) ① --- ----- ----- ----- <u>별지 제8호서식</u>----- ----- -----.</p>	<p>제10조(이의신청) ① (개정안과 같음)</p>
<p>② (생략)</p> <p><신 설></p>	<p>② (현행과 같음)</p> <p><u>제11조의2(청구의 수리 및 각하) ① 의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u></p>	<p>② (현행과 같음)</p> <p>제11조의2(청구의 수리 및 각하) ① ~ ⑥ (개정안과 같음)</p>

현행	개정안	수정안
	<p><u>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법 제4조, 법 제5조 및 법 제10조제1항(법 제11조제5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요건에 적합한 경우에는 주민조례청구를 수리하고, 요건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주민조례청구를 각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수리 또는 각하 사실을 대표자에게 알려야 한다.</u></p> <p>1. <u>법 제11조제2항(같은 조 제5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하며, 이하 같다)에 따른 이의신청이 없는 경우</u></p> <p>2. <u>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제기된 모든 이의신청에 대하여 같은 조 제3항(같은 조 제5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결정이 끝난 경우</u></p>	

현행	개정안	수정안
	<p>② 의장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 이내에 제1항에 따라 주민조례청구를 수리하거나 각하하여야 한다.</p> <p>1. 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 : 법 제10조 제2항에 따른 열람기간이 끝난 날(법 제11조제5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에는 보정된 청구인명부에 대한 열람기간이 끝난 날)부터 3개월 이내</p> <p>2. 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 모든 이의 신청에 대하여 법 제11조제3항에 따른 심사·결정이 끝난 날(법 제11조제5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에는 보정된 청구인명부의 서명에 제기된 모든 이의신청에 대한 심사·결정이 끝난 날)부터 3개월 이내</p>	

현행	개정안	수정안
	<p>③ 의장은 제1항에 따라 주민조례청구를 각 하하려면 대표자에게 의견을 제출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p> <p>④ 의장은 제출된 청구인명부가 제3조제1항에 따른 서명수에 명백하게 미달하는 경우에는 법 제11조에 따른 서명유무효 심사 및 이의신청과 제3항에 따른 의견제출 절차를 생략하고 각하할 수 있다.</p> <p>⑤ 의장은 청구인명부의 유효한 서명이 제3조제1항에 따른 서명수 이상으로 확인된 경우 나머지 청구인명부의 서명확인을 보류하고 제1항에 따라 수리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p> <p>⑥ 의장은 「지방자치법」 제76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이 조 제1항에 따라 주민조례청구를 수리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의장 명의로 주</p>	

서울특별시의회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2조의 제목“(주민조례청구권의 보장)”을“(주민조례청구권의 보장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서울특별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는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 청구권자(이하 “청구권자”라 한다)가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 또는 폐지할 것을 청구(이하 “주민조례청구”라 한다)할 수 있도록 주민조례청구의 요건, 참여·서명방법 및 절차 등에 대한 홍보·교육과 주민청구조례안의 작성에 대한 자문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4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 중 “한다)와 대표자 증명서의 발급신청서”를 “한다)”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대표자가 복수인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공동대표자용 서식을 제출하여야 한다. 대표자 전원의 동의로 주민조례청구에 필요한 통지를 받을 3인 이내의 대표자(이하 “선정대표자”라 한다)를 지정할 수 있으며, 서울특별시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선정대표자에 대한 통지로 전체 대표자에 대한 통지를 갈음할 수 있다.

③ 대표자가 제2항 후단에 따른 선정대표자를 지정하지 않는 경우 의장은 선정대표자의 지정을 요청할 수 있다.

제5조제1항 중 “서울특별시의회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을 “의장”으로, “대표자 증명서는 별지 제2호서식”을 “대표자증명서는 별지 제3호서식”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대표자 증명서”를 “대표자증명서”로 하며,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③ 대표자는 법 제12조 및 이 조례 제11조의2에 따른 주민조례청구의 수리·각하 결정전까지 의장에게 서면으로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주민조례청구의 철회를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대표자가 복수인 경우에는 제4조제2항의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공동대표자용 서식을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 중 “별지 제3호서식”을 “별지 제5호서식”으로, “별지 제4호서식”을 “별지 제6호서식”으로 한다.

제7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중전의 제목 외의 부분) 중 “별지 제5호서식”을 “별지 제7호서식”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② 대표자는 청구인명부를 자치구 동 별로 구분하여 권별로 묶고 각 권에 별지 제7호서식의 표지를 부착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제1항 중 “별지 제6호서식”을 “별지 제8호서식”으로 한다.

제11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1조의2(청구의 수리 및 각하) ① 의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법 제4조, 법 제5조 및 법 제10조제1항(법 제11조제5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요건에 적합한 경우에는 주민조례청구를 수리하고, 요건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주민조례청구를 각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수리 또는 각하 사실을 대표자에게 알려야 한다.

1. 법 제11조제2항(같은 조 제5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하며, 이하 같다)에 따른 이의신청이 없는 경우

2. 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제기된 모든 이의신청에 대하여 같은 조 제3항 (같은 조 제5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결정이 끝난 경우

② 의장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 이내에 제1항에 따라 주민조례청구를 수리하거나 각하하여야 한다.

1. 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 :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열람기간이 끝난 날(법 제11조제5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에는 보정된 청구인명부에 대한 열람기간이 끝난 날)부터 3개월 이내

2. 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 모든 이의신청에 대하여 법 제11조제3항에 따른 심사·결정이 끝난 날(법 제11조제5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에는 보정된 청구인명부의 서명에 제기된 모든 이의신청에 대한 심사·결정이 끝난 날)부터 3개월 이내

③ 의장은 제1항에 따라 주민조례청구를 각하하려면 대표자에게 의견을 제출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④ 의장은 제출된 청구인명부가 제3조제1항에 따른 서명수에 명백하게 미달하는 경우에는 법 제11조에 따른 서명 유효 심사 및 이의신청과 제3항에 따른 의견제출 절차를 생략하고 각하할 수 있다.

⑤ 의장은 청구인명부의 유효한 서명이 제3조제1항에 따른 서명수 이상으로 확인된 경우 나머지 청구인명부의 서명확인을 보류하고 제1항에 따라 수리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⑥ 의장은 「지방자치법」 제76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이 조 제1항에 따라 주민조례청구를 수리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의장 명의로 주민청구조례안을 발의하여야 한다.

제12조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법 제14조에 따라 청구인명부의 서명 확인”

을 “주민조례발안 관련”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제2호 및 제3호로 하며, 같은 조에 제1호 및 제4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법 제6조제2항에 따른 청구권자 확인 사무
4. 제2조제1항에 따른 교육·홍보·지원 등 사무

별지 제1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 서울특별시의회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별지 제1호서식]

주민조례청구서

※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를 합니다.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청구인의 대표자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	
	[] 위 주소에 주민등록된 주민 [] 「출입국관리법」 제10조에 따른 영주(永住)할 수 있는 체류자격 취득일 후 3년이 지난 외국 인으로서 같은 법 제34조에 따라 ○○명의 외국인등록대장에 올라 있는 사람	
청구조례명	조례의 []제정 []개정 []폐지 청구	
주요내용	○ ○ ○	
청구이유		

전자서명에 필요한 정보시스템 이용 신청 여부 ※ 이용신청을 하여야 전자서명이 가능합니다. ※ 이용신청시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 제6조제2항에 따라 이 청구서 및 조례 안, 대표자증명서(대표자 성명 포함, 상세주소를 제외한 주소)는 정보시스템에 공개됩니다.	[] 이용신청 [] 이용신청 안함
정보시스템 대표자 개인정보 공개 범위 선택	▶ 대표자 전화번호 []공개 [] 비공개 ▶ 대표자 상세주소 []공개 [] 비공개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라 위와 같이 주민조례를 청구하며, 같은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대표자증명서의 발급을 신청합니다.

※ 대표자가 복수인 경우 별지 제2호서식의 공동대표자 서식을 추가 제출하여야 합니다.

년 월 일

위 대표자

(서명 또는 인)

서울특별시의회의장 귀하

첨부서류	위 청구조례안 및 청구권자 확인서류(주민등록증 등)	수수료 없음
유의사항		
- 주요내용 및 이유란이 부족하면 요지만 적고 그 내용은 별지로 작성합니다.		

210mm×297mm[백상지 80g/㎡]

별지 제2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 서울특별시의회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별지 제2호서식]

공동대표자용 []청구 · []철회 · []선정대표자 지정 서식

청구조례명	조례의 []제정 []개정 []폐지 청구
주요내용	○ ○ ○

청구인의 대표자

번호	성명	생년월일	주소 (거소·체류지)	전화번호	서명 또는 날인	비고
						선정 대표
						선정 대표
						선정 대표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라 위와 같이 주민조례를 []청구, []철회 하오니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의회의장 귀하

작성방법

- “번호”란에는 일련번호를 적습니다.
- “성명”란에는 청구인의 성명을 한글로 작성합니다.
- “주소”란에는 상세주소(동번호, 호수 또는 층수)까지 작성합니다.
- “서명 또는 날인”란에는 성명을 자필로 적거나 손도장 또는 도장을 찍습니다.

별지 제3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 서울특별시의회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별지 제3호서식]

주민조례청구 대표자증명서			
성명		생년월일	
주소 (거소·체류지)	(전화번호 :)		
청구조례명	조례의 []제정 []개정 []폐지 청구		
서명요청기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제외기간 :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위 사람은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 제6조제2항에 따른 청구인의 대표자로서 위와 같이 18세 이상의 주민에게 서명할 것을 요청할 권한이 있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서울특별시의회의장			직인

별지 제4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 서울특별시의회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별지 제4호서식]

주민조례청구 철회 신청서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신청인 (대표자)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	
청구조례명	조례의 []제정 []개정 []폐지 청구	
주민조례청구서 제출일자	년 월 일	

위 주민조례청구를 철회하고자 하오니 처리바랍니다.

※ 대표자가 복수인 경우 별지 제2호서식의 공동대표자용 서식을 추가 제출하여야 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

서울특별시의회의장 귀하

첨부서류	대표자증명서(수임자가 있는 경우 수임자증명서 포함)	수수료 없음
------	------------------------------	-----------

유의사항

- 청구조례명란에는 철회하려는 청구조례의 명칭을 작성합니다.

별지 제5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 서울특별시의회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별지 제5호서식]

주민조례청구 서명요청권 위임신고서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청구조례명	조례의 []제정 []개정 []폐지 청구	
대표자	성명	생년월일
	주소(거소·채류지) (전화번호 :)	
수임자	성명 (서명 또는 날인)	생년월일
	주소(거소·채류지) (전화번호 :)	
	기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성명 (서명 또는 날인)	생년월일
	주소(거소·채류지) (전화번호 :)	
	기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 제7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대표자의 서명요청권을 수임자에게 위임하였음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

서울특별시의회의장

귀하

유의사항

청구조례명란에는 조례의 명칭을 작성합니다.

별지 제6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 서울특별시의회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별지 제6호서식]

주민조례청구 서명요청권 위임신고증					
청구명	조례의 []제정 []개정 []폐지 청구				
대표자	성명		생년월일		
	주소 (거소· 체류지)	(전화번호 :)			
수임자	성명		생년월일		
	주소 (거소· 체류지)	(전화번호 :)			
	기간	년 월 일	부터	년 월 일	까지
	성명		생년월일		
	주소 (거소· 체류지)	(전화번호 :)			
	기간	년 월 일	부터	년 월 일	까지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 제7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대표자가 서명요청권을 위임한 사실을 신고하였으므로 위 수임자는 서명요청권이 있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서울특별시의회의장 직인					

청구조례명란에는 조례의 명칭을 작성합니다.

210mm×297mm[백상지 80g/m²]

청구인명부

청구조례명	조례의 []제정 []개정 []폐지 청구
주요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 ○
서명을 요청한 사람	[]대표자 (성명) (서명 또는 날인) []수입자 (성명) (서명 또는 날인)

위 주민조례청구에 동의하여 다음과 같이 청구인명부에 서명합니다.

※ 대표자 및 수입자는 서명요청시 조례안 및 대표자·수입자증명서를 제시하고 청구취지와 주요내용을 설명하여야 합니다.

번호	성명	생년월일	주소 (거소·체류지)	서명 또는 날인	서명일	비고

작성방법

1. “번호”란에는 서명 순서에 따라 일련번호를 적습니다.
2. “성명”란에는 청구인의 성명을 한글로 적습니다.
3. “주소”란에는 도로명과 건물번호까지 적고 상세주소를 적습니다.
4. “서명 또는 날인”란에는 본인임을 알아볼 수 있도록 자필로 성명을 적거나 도장을 찍습니다.
5. 서명자가 서명을 철회한 경우에는 붉은 선으로 두 줄을 그어 지우고, “비고”란에 철회한 날짜를 적습니다.

별지 제8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 서울특별시의회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별지 제8호서식]

이의신청서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신청인	성명	생년월일
	주소(거소·체류지) (전화번호 :)	
이의대상	() 조례의 []제정 []개정 []폐지 청구의 청구인명부	
신청 취지		
신청 사유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 제11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이의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서울특별시의회의장 귀하

신청 취지 및 신청 사유란이 부족하면 요지만 적고, 그 내용은 별지로 작성합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4년 2월 1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주민조례청구 수리 또는 각하 기한에 관한 적용례) 제11조의2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당시 조례의 제정과 개정·폐지 청구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도 적용한다.

제3조(주민조례청구 수리 또는 각하 기한에 관한 특례) 제11조의2제2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의장은 이 조례 시행 당시 제11조의2제2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기간이 경과한 조례의 제정과 개정·폐지 청구에 대하여 이 조례 시행일부터 1개월 이내에 제11조의2제1항에 따라 해당 청구를 수리하거나 각하하여야 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2조(주민조례청구권의 보장) ① <u>서울특별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는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 청구권자(이하 “청구권자“라 한다)가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 또는 폐지할 것을 청구(이하 “주민조례청구“라 한다)할 수 있도록 주민조례청구 절차에 대한 홍보·교육 및 주민청구조례안의 작성에 대한 자문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u></p> <p>② (생략)</p>	<p>제2조(주민조례청구권의 보장 등) ① <u>서울특별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는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 청구권자(이하 “청구권자”라 한다)가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 또는 폐지할 것을 청구(이하 “주민조례청구”라 한다)할 수 있도록 주민조례청구의 요건, 참여·서명방법 및 절차 등에 대한 홍보·교육과 주민청구조례안의 작성에 대한 자문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u></p> <p>② (현행과 같음)</p>
<p>제4조(조례의 제정·개정·폐지 청구서 등)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조례의 제정·개정·폐지 청구서(이하 “청구서”라 한다)와 대표자 증명서의 발급신청서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다.</p>	<p>제4조(조례의 제정·개정·폐지 청구서 등) ① ----- ----- ----- 한다)----- ----- -----.</p>

현행	개정안
<p><u><신설></u></p> <p><u><신설></u></p> <p>제5조(대표자증명서 발급 등) ① 법 제6조제2항에 따라 <u>서울특별시의 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u>이 발급하는 청구인의 <u>대표자 증명서</u>는 <u>별지 제2호서식</u>에 따른다.</p> <p>② 의장이 법 제6조제2항에 따라 <u>대표자 증명서</u> 발급 사실을 공표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p>	<p>② <u>대표자가 복수인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공동대표자용 서식을 제출하여야 한다. 대표자 전원의 동의로 주민조례청구에 필요한 통지를 받을 3인 이내의 대표자(이하 “선정대표자”라 한다)를 지정할 수 있으며, 서울특별시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선정대표자에 대한 통지로 전체 대표자에 대한 통지를 갈음할 수 있다.</u></p> <p>③ <u>대표자가 제2항 후단에 따른 선정대표자를 지정하지 않는 경우 의장은 선정대표자의 지정을 요청할 수 있다.</u></p> <p>제5조(대표자증명서 발급 등) ① ----- <u>의장</u>----- ----- ----- <u>대표자증명서는 별지 제3호서식</u>-----.</p> <p>② ----- <u>대표자증명서</u> ----- ----- -----.</p>

현행	개정안
<p>1. ~ 4. (생략)</p> <p><u><신설></u></p> <p>제6조(서명요청권의 위임신고서 등) 법 제7조제2항에 따른 대표자의 서명요청권 위임신고서는 <u>별지 제3호서식</u>에 따르고, 서명요청권 위임신고증은 <u>별지 제4호서식</u>에 따른다.</p> <p>제7조(청구인명부) 법 제9조에 따른 청구인명부는 <u>별지 제5호서식</u>에 따른다.</p> <p><u><신설></u></p>	<p>1. ~ 4. (현행과 같음)</p> <p><u>③ 대표자는 법 제12조 및 이 조 제11조의2에 따른 주민조례청구의 수리·각하 결정전까지 의장에게 서면으로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주민조례청구의 철회를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대표자가 복수인 경우에는 제4조제2항의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공동대표자용 서식을 제출하여야 한다.</u></p> <p>제6조(서명요청권의 위임신고서 등) 법 제7조제2항에 따른 대표자의 서명요청권 위임신고서는 <u>별지 제5호서식</u>에 따르고, 서명요청권 위임신고증은 <u>별지 제6호서식</u>에 따른다.</p> <p>제7조(청구인명부) ① ----- ----- <u>별지 제7호서식</u>----- -----.</p> <p><u>② 대표자는 청구인명부를 자치구동 별로 구분하여 권별로 묶고 각 권에 별지 제7호서식의 표지를 부착하여 제출하여야 한다.</u></p>

현행	개정안
<p>제10조(이의신청) ① 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청구인명부의 서명에 이의를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u>별지 제6호서식</u>의 이의신청서를 의장에게 제출해야 한다.</p> <p>② (생략)</p> <p><u><신설></u></p>	<p>제10조(이의신청) ① ----- ----- ----- <u>별지 제8호서식</u>----- -----.</p> <p>② (현행과 같음)</p> <p><u>제11조의2(청구의 수리 및 각하) ①</u> <u>의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법 제4조, 법 제5조 및 법 제10조제1항(법 제11조제5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요건에 적합한 경우에는 주민조례청구를 수리하고, 요건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주민조례청구를 각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수리 또는 각하 사실을 대표자에게 알려야 한다.</u></p> <p>1. <u>법 제11조제2항(같은 조 제5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하며, 이하 같다)에 따른 이의신청이 없는 경우</u></p> <p>2. <u>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제기된 모든 이의신청에 대하여 같은 조 제3항(같은 조 제5항에 따라</u></p>

현행	개정안
	<p><u>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결정이 끝난 경우</u></p> <p>② <u>의장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 이내에 제1항에 따라 주민조례청구를 수리하거나 각하하여야 한다.</u></p> <p>1. <u>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 :</u> <u>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열람기간이 끝난 날(법 제11조제5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에는 보정된 청구인명부에 대한 열람기간이 끝난 날)부터 3개월 이내</u></p> <p>2. <u>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u> <u>모든 이의신청에 대하여 법 제11조제3항에 따른 심사·결정이 끝난 날(법 제11조제5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에는 보정된 청구인명부의 서명에 제기된 모든 이의신청에 대한 심사·결정이 끝난 날)부터 3개월 이내</u></p> <p>③ <u>의장은 제1항에 따라 주민조례청구를 각하하려면 대표자에게 의견을 제출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u></p> <p>④ <u>의장은 제출된 청구인명부가 제3조제1항에 따른 서명수에 명백</u></p>

현행	개정안
<p>제12조(사무협조) 의장은 <u>법 제14조에 따라 청구인명부의 서명 확인</u> 사무를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사무에</p>	<p>하게 미달하는 경우에는 <u>법 제11조에 따른 서명 유무효 심사 및 이의신청과 제3항에 따른 의견제출 절차를 생략하고 각하할 수 있다.</u></p> <p>⑤ 의장은 <u>청구인명부의 유효한 서명이 제3조제1항에 따른 서명수 이상으로 확인된 경우 나머지 청구인명부의 서명확인을 보류하고 제1항에 따라 수리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u></p> <p>⑥ 의장은 「지방자치법」 제76조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이 조 제1항에 따라 주민조례청구를 수리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의장 명의로 주민청구조례안을 발의하여야 한다.</p> <p>제12조(사무협조) ----- <u>주민조례발안 관련</u> ----- ----- -----</p>

현행	개정안
<p>대해 시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시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p> <p><u><신설></u></p> <p>1.·2. (생략)</p> <p><u><신설></u></p>	<p>-----</p> <p>-. -----</p> <p>-----</p> <p>-----.</p> <p>1. <u>법 제6조제2항에 따른 청구권자 확인 사무</u></p> <p>2.·3. (현행 제1호 및 제2호와 같음)</p> <p>4. <u>제2조제1항에 따른 교육·홍보·지원 등 사무</u></p>